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정책브리핑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10. 31. (화)	담당부서	가스산업과
담당과장	황병소 과장(044-203-5230)	담 당 자	김효 사무관(044-203-5214)

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9.3% 인하

- `17.10월 미수금 회수 완료, 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)는 **11월 1일(수)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.3% 인하**한다고 밝혔다. (서울시 소매요금 기준, 부가세 별도, 이하 동일)

< `17.11.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>

(단위: 원/MJ)

구 분	현 행	변 경	증 감	증감률
평 균	**15.2336**	**13.8214**	**△1.4122**	**△9.3%**
주 택 용	**16.1694**	**14.7572**	**△1.4122**	**△8.7%**
업무난방용	16.5181	**15.1059**	△1.4122	△8.5%
일반용(영업용1)	15.9703	**14.5581**	△1.4122	△8.8%
일반용(영업용2)	14.9686	**13.5564**	△1.4122	△9.4%
산 업 용	**13.8922**	**12.4800**	**△1.4122**	**△10.2%**
열병합용	14.7438	**13.3316**	△1.4122	△9.6%
열전용설비용	16.4990	**15.0868**	△1.4122	△8.6%
수송용(CNG)	13.7946	**12.3824**	△1.4122	△10.2%

* 일반용,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*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
* 영업용1: 음식점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, 수영장, 구내식당, 세탁소, 학교 급식시설 등
* 영업용2: 욕탕업, 폐기물처리(소각·건조)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

□ 이번 요금인하는 **'17.10월에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를 완료**함에 따라 **정산단가(1.4122원/MJ) 해소를 반영**한 결과다.

○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, **'08~'12년 유가 급등기**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**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**함에 따라 도시가스 **미수금이 '12년말 기준 5.5조원 누적**되었다.

○ **'13년 이후**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**정산단가를 부가**해 왔으며, **'17년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**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**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 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**하게 됐다.

□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모든 **용도 평균요금**은 **11월 1일(수)부터 현행 15.2336원/MJ에서 1.4122원/MJ 인하된 13.8214원/MJ로 조정**한다.

○ 이에 따라 **주택용은 8.7% 인하**되며, **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**(약 1,420만 가구)의 **동절기(12~2월) 월평균 요금**은 **현행 86,154원에서 78,726원으로 7,428원 감소**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도시가스로 취사만 하는 가구(298만 가구): 월 663원 요금감소(8,695원 → 8,031원)

□ **향후 정부는**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,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**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**해 나가는 한편, **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**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김효 사무관(☎ 044-203-52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